

2000. 9. 9(토)  
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

제천시기조례 중 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#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8. 31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0. 8. 31  
다. 상정일자 : 2000. 9. 4(제64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조동현)

### 가. 제안사유

- 새천년에 부응하는 더욱 개성있고 독특한 이미지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천시이미지형성 사업으로 새로운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개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천시기의 모양과 규격개정 (별표 1)
- 시기의 상징 개정 (별표 2)
- 문장의 모양 개정 (별표 3)
- 휘장의 모양과 규격 개정 (별표 4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종철)

### 가. 법적인 검토

-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중 별표의 내용(심볼마크)만 개정 하는 것이며,
-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20일이상 압법예고기간을 거친후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.

## 나. 행정적인 검토

- 제천시 이미지 형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보 게재 공고후, 용역업체 선정, 시민설문조사,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선정 결정하였기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적합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.
- 다만, 우리시의 상징물인 시기, 문장 휘장, 캐릭터등이 “제천시 기조례”와 “제천시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”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며, 시의새 · 꽃 · 나무에 관한 조례 규정은 없는 바, 향후 시의 상징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- 또한, 자치법규집의 편제상 “제천시기조례”는 제4편 산업건설 제5장 문화관광에 속해 있으나 동조례는 기획이나 공보등 시정 업무총괄 부서의 소관 조례로 이관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 (최몽룡 위원)

- 심벌 마크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나 각계 인사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 찬성을 받았는지?
- 우리 제천시민 전체를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찬성했다고 생각하는지?

### 나. 답변요지 (자치행정과장 조동현)

- 1차 응모작품 심사때 21명의 위원님들께서 3개 작품을 선정 하여 13표, 11표, 6표로 개정안의 심볼마크가 제일 많이 나왔으며,
- 2차 심사때는 1차 심사내용을 보완해서 심의한결과 21명중 15명이 본 안건의 작품을 선정하였고

- 5회에 걸쳐 1,001명에 주민과 세명대학교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의견 조사한 결과 70~80%가 본 안건의 작품을 선정 및 추천 하였음.

## 5. 소수의견

“ 없음 ”

## 6. 토론요지

“ 없음 ”

## 7. 심사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